



대학생 자치기구와 함께 하는 대학 인권현안 온라인 토론회

협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위한 대학공동체의 역할과 책임

2020. 11. 28.(토) 14:00 ~ 17:00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생 자치기구와 함께 하는 대학 인권현안 온라인 토론회

협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위한 대학공동체의 역할과 책임

2020. 11. 28.(토) 14:00 ~ 17:00

▶ YouTube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생 자치 기구와 함께 하는 대학 인권현안 토론회 안내

- **일시** : 2020. 11. 28.(토) 14:00 ~ 17:00
- **장소** :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인원 20명 이내 제한
- **대상** : 전국 대학생 및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방식** : 온라인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생중계
- **프로그램** ◎ 사회 : 신민준((가)청년문화연대)

| 시간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발표 |
|------------------------|---|---|
| 14:00 ~ 14:10 |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 인권교육기획과장 (권혁장) |
| <발제> | | |
| 14:10 ~ 14:50 (40분) | “온라인커뮤니티(에브리타임)를 통해 드러난 대학 내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 이에 대한 대학공동체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제언” | 유니브페미 (노서영·양승연) |
| <지정토론> | | |
| 15:00 ~ 16:10 (70분) | 1.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 | 홍익대 유학생위원회 (신해강) |
| | 2. 온라인커뮤니티(에브리타임) 이용자 경험 실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모색 |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
| | 3.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학생자치기구 역할과 책임 -시민성 관점의 학생자치기구 역할 전환을 중심으로-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박주현) |
| | 4.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인권센터 역할과 책임 -인권센터 활성화 프로젝트 경험을 중심으로- | 가톨릭대 인권동아리 '가다' (가다:가톨릭대 인권 찾으러 가다) (최아현) |
| | 5.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역할과 책임 | 부산대 총학생회 (이준영) |
| 16:10 ~ 16:50 (40분)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
| 16:50 ~ 17:00 | · 정리 및 마무리 | 인권교육기획과장 (권혁장) |

※ 발표자 및 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발 제> 온라인커뮤니티(에브리타임)를 통해 드러난 대학 내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 이에 대한 대학공동체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제언 5
 - 유니브페미(노서영·양승연)

<토 론> 1.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 27
 - 홍익대 유학생위원회(신해강)

2. 온라인커뮤니티(에브리타임) 이용자 경험 실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모색 37
 - 청년참여연대(조희원)

3.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학생자치기구 역할과 책임 51
 - 시민성 관점의 학생자치기구 역할 전환을 중심으로 -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박주현)

4.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인권센터 역할과 책임 69
 - 인권센터 활성화 프로젝트 경험을 중심으로 -
 - 가톨릭대 인권동아리 '가다'(가다:가톨릭대 인권 찾으러 가다)(최아현)

5.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역할과 책임 77
 - 부산대 총학생회(이준영)

발제

**온라인커뮤니티(에브리타임)를
통해 드러난 대학 내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
이에 대한 대학공동체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제언**

유니브페미(노서영·양승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실태와 공동체적 해결에 대한 제언



유니브페미(노서영·양승연)

1. 들어가며: 혐오표현, 입장권을 빼앗다

2020년 10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유니브페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에브리타임에서 발견된 약 550개의 혐오표현을 정식으로 신고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 2개월이 조금 넘는 때였고, 에브리타임 본사로 알려진 건물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와 여성혐오성 게시물을 방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윤리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는 6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리고 이날, 에브리타임에 우울을 토로하며 위로를 구하던 한 학생은 돌아온 괴롭힘 댓글들을 신고할 곳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 뒤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만연한 혐오가 있었고, 효율을 추구하는 자동삭제시스템에 의존하며 수년째 책임을 회피 해온 플랫폼 에브리타임이 있었으며, 사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온 대학 당국과 인권센터가 있었다. 또, 온라인에서의 문제라서 추적이 어렵고 학생들 간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사소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찰이 있었고, 더 이상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대안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구분되지 않는 우리의 일상 공간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었다. 단 한 곳만 제대로 작동했다라면, 누구든 온라인 공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시간표 어플리케이션으로 2010년에 출시된 에브리타임은 익명 커뮤니티, 강의평/시험정보 공유, 학점계산기, 책 중고거래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며 전국 396개 캠퍼스 455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대학생 커뮤니티로 성장했다(2020년 11월 13일 기준). 에브리타임은 2018년 앱스토어에서 무료 전체 부문과 무료 소셜 네트워크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앱 사용 빈도에서도 1위에¹⁾ 오를 만큼 대학생황에 있어 ‘필수 앱’이 되었지만,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익명성, 삭제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혐오표현 양상의 특수성을 좀더 살펴보자. 초기에 민주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한 평등한 공론장으로 상상되었던 온라인 공간은 고도로 발달하고 세분화 될수록 단순한 ‘편향적 확성기’²⁾의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직면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정보를 주로 수집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이나 정체성을 극화하여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³⁾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여러 갈등의 양상은 오프라인에서보다 알팍하고 극단적인 성격을 띤다. 온라인의 장점으로 여겨지던 상호성은 오히려 일부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게 하며, 온라인상의 의견과 집단을 극단화시킨다. 온라인 공간의 인지 왜곡과 확증편향으로 인해, 혐오표현은 더욱 많이 생산되고 더욱 널리 유포된다. 특히 에브리타임이 도입한 신고누적에 따른 자동삭제 시스템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편향성을 강화한다. 단순히 많은 수의 신고가 모이면 게시글이 삭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수의 의견만이 남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대학의 문화가 여성혐오와 소수자혐오를 체화하고, 누구도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브리타임에서 절대다수로 드러나는 여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혐오 발언은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혐오 정서를 재생산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산된 소수자 혐오는 또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수자의 발언권을 빼앗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가 혐오표현과 소수자 혐오를 용인하고 체화할수록, 그리고 게시판에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공감을 받을수록, 소수자 혹은 인권 감수성을 지닌 학생들의 커뮤니티 사용은 어려워진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커뮤니티는 활성화되지만, 소수자 혐오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평등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는 평등한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는 온·오프라인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소수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사용자의 소속과 정체성이 명확하고, 대학 캠퍼스라는 한정적인 무대를 커뮤니티의 발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하는 혐오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학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빠르게 게시되는 글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를 표출해 그들의 실제 삶을 위축시킨다. 게다가 같은 대학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1) “20대가 가장 자주 쓰는 앱은 '에브리타임'?”, <한국경제>, 2018.03.16.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03163855j>

2) 김수아, 이에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p.11

3) 위의 논문, p.11

듣는 누군가에 의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행위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은 부지기수이며, 익명의 가해자가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해 사이버 불링과 스토킹을 행하기도 한다.⁴⁾ 동시에, 대부분의 글이 익명으로 게시되어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비롯한 불안감을 안겨준다. 게다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수자 혐오가 지배적인 정서라는 사실은 소수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긍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는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대학의 문화와 제도가 더욱 평등하게 구성되는 것을 막는다. 법학자 제러미 월드론에 따르면, 혐오표현 규제는 모욕, 불쾌감,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공공선과 정의의 기초에 관한 상호 확신의 공공선을 지킨다.⁵⁾ 공론장이 무너진 학생사회에 유일하고도 조악하게 조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내 소수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지금, 학교와 학생회, 플랫폼과 이용자, 그리고 국가 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강의마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캠퍼스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학내 소수자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될 수 있다. 실제로 비대면 학기가 진행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또, 해당 온라인 공간 바깥의 다른 견해나 상황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가로막혔다. 디지털 네이티브natives들의 온라인 드웰링dwelling 시대, 혐오표현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과 대응, 예방이 본격화되어야 할 때다. 이 글은 유니브페미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F5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물인 책자 『캠퍼스 혐오표현 새로 고침 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4) 김수아, 김민정, 이동후, 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p.217.

5)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80쪽.

2. 대학 공동체의 책임과 역할

성별이나 직업, 지역 등 특정한 정체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혐오표현’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몇 년 사이 대두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로의 존엄을 훼손하고, 듣는 이에게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표적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사회 전체에 전파하며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회 역시 수업 중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대화방에서 범람하는 혐오 표현으로 수많은 갈등이 유발되며 진통을 겪어왔다.⁶⁾ 하지만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해결이 어떻게 가능한지, 예방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모색하기는 쉽지 않았다. 학내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신고가 접수되어도 물리적인 폭력 사건에 비해 경미하게 취급되었고, 혐오표현을 판단하고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규범이 부재했다.⁷⁾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유니브페미 F5 프로젝트 모니터링팀에서 수집한 596개의 혐오 표현 게시물을 혐오의 대상에 따라 유형별로 통계를 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개수가 596개가 넘어가는 이유는 복합차별을 담고 있는 게시물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도 페미니스트와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게시물이 각각 47%,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종, 쿼어, 학벌 등에 대한 혐오가 뒤를 이었다.

6)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초중고 교사, 대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공무원,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표출하는 표현’에 대한 개입과 대응 필요성에 대해 초중고 98.3%, 대학 100.0%, 공공기관 94.4%, 언론 100.0%가 매우 또는 다소 필요하다고 답했다.

7) 위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실시한 FGI에 참여한 대학의 인권센터 등 관계자들은 기관에서 혐오표현에 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인권센터 등에서 적절히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가 소송에 휘말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혐오유형별 개수

공학 대학은 전반적으로 반(反)페미니스트 정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평등 담론의 반동으로서 페미니스트 혐오·여성혐오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여타의 혐오 담론들도 주류 정서로 통용되었다. 여자 대학은 페미니즘이 분명하게 주류 담론으로 기능하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었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담론이 조성되는 등 성소수자나 인종, 빈곤에 대한 혐오표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았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평등한 교육기회와 참여 및 발언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에 대한 상호존중, 차별 금지, 다양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온·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해 개입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 또한, 혐오표현을 넘어 다양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선언하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구성원에게는 혐오표현의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혐오와 그 해악에 대응할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본부에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된다. 대학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대학 공동체 전체가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⁸⁾이다. 실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혐오성 게시글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례는, 학교 본부 차원의 노력으로서 전문적인 젠더 수업이 개설되고 커뮤니티 이용자인 학생들이 평등에 대해 직접 고민하는

8)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 전반에 적용되는 권리와 책임」 (University-Wide Statement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서 인용. 전문은 하버드대학교 교무처(Office of the Provost) 홈페이지 <https://provost.harvard.edu/university-wide-statement-rights-and-responsibilities>에서 볼 수 있다.

분위기가 형성된 경우뿐이었다는 사실에서도 학교 차원의 제도적인 변화와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각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1) 학교 본부 (2) 학과 (3) 학생회 (4) 교직원 (5) 차별시정 기구 (6) 자치 언론 (7) 학생 (8)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 본부

총장, 처장, 학장을 비롯한 학교 본부의 관리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평등과 반차별의 권리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혐오표현의 총괄책임자인 총장은 학내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다양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확장을 통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총장 직속 또는 부설기관의 형태로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고, 법리적 지식뿐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위촉을 비롯하여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각 기구와 협력하여 각 조직 내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 개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며, 혐오표현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중간책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학과

학과장을 비롯한 전 학과의 교수진은 차별시정기구와 중간책임자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학과 내에서 혐오표현과 괴롭힘,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만약 학과가 발행한 자료 등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학과 차원의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평등한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하며, 학과 내에서 문제 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처리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에 따라 학과 내에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과 사무실은 학교의 학사운영, 행사 등 전반에 걸쳐 혐오표현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배제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회

모든 학생회장(단)은 학생회가 구성되는 초기에 학내 기관 또는 외부 관련 기관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학생회가 주관하는 축제 등의 학내·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혐오표현과 괴롭힘,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각 학과와 협력하여 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혐오표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학내 혐오표현 발생 시 학생회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한 합의를 수립하고 공동체 내 소수자 집단의 존재와 혐오표현의 해악,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구성원이 연루된 문제임을 환기시킴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4) 교직원

채용 및 임용 초기 단계에 혐오표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직원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혐오표현이 수업 중, 학교 환경, 연구실, 게시물이나 안내사항과 같이 자신이 책임지는 활동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교직원 간이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 또는 노동조합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

(5) 차별시정기구

차별시정기구는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한 예방과 사건 대응을 담당하며, 학내에 존재하는 제도적·문화적 차별을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별도의 부처나 위원회, 기구로 분리·특화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이미 학내에서 인권침해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인권 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차별시정기구는 혐오 사건 발생 시 학생, 직원, 교수에 대한 상담, 조사, 조정과 중재를 비롯해 경우에 따라 징계까지 이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혐오표현 발생 시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교수, 학생, 직원 등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피해자의 비밀유지,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충분히 지원할 책임이 있다. 또, 실무 책임자로서 사건의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총괄해야 한다. 차별시정기구는 학내 영역별 권리 인식과 차별·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고, 사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차별시정기구의 활동 전반과 그 결과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6) 자치언론

학내 언론사는 학내 여론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기사 발행 시 혐오표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직접 발간물뿐 아니라 학교 당국이나 총학생회에서 생산하는 미디어나 출판물에도 혐오표현이 포함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으며, 혐오표현 발생 시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혐오표현의 판단기준과 해악 등을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평등한 대학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어 참고할 수 있다.

(7) 학생

학생 역시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는 구성원을 지지하며 혐오표현 발생 시 신고와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발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택할 수 있다. 대항발화는 혐오표현의 대상을 뒤집어 맞대응함으로써 혐오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상대의 혐오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목격자, 동료, 구성원들이 모두 대항발화에 동참하면 피해자가 아닌 발화자가 고립되는 효과를 낳는다.

(8)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나 플랫폼사업자는 대학 커뮤니티라는 공공성 또는 대표성을 인지하고 혐오표현 없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이나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와 관련 협약을 맺어 혐오표현 신고 조사에 대한 차별시정기구와 경찰의 타당한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부분 학생 구성원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협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이나 사이버불링 등이 발생했을 때 자정 노력을 하고 피해자와 연대해야 한다. 개별 게시판 관리 권한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관리하는 게시판 내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문화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의 삭제에 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별시정기구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간의 협약 등을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혐오표현 예방·대응의 학내 규범화 방안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실질적·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적용 범위와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무 명시를 들 수 있다.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은 기본적으로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학생, 연구생 등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규정 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인권센터와 같은 기존 학내기구의 규정에 적용 범위가 학내 모든 구성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반복 기술할 필요가 없지만, 학생처 산하기구로 학생상담센터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의 사건을 다룰 수 없으므로 기구의 독립성과 규정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대학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연구원, 자원봉사자 등 대학 내뿐만 아니라 대학 외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대학 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발생하거나 유관 기관과의 관계에서 발화되는 혐오표현도 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구성원이 학외나 유관 기관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듣게 되거나, 거꾸로 그들에게 혐오표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규정은 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교내활동, 현수막, 대자보, 교내신문, 교내방송, 기타 발간자료, 각종 회의 등을 통해 혐오표현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대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페이지를 비롯한 학내 인터넷망,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에서의 문답, 게시물과 댓글 등 온라인 활동도 마찬가지로 포함된다.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여기에 대응할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혐오표현이 발화될 때마다 징계와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대학은 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혐오표현 예방에 힘써야 한다. 예방에는 교육부에서 강제하는 모든 구성원의 의무교육 이수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학생 활동 및 교육 지원, 홍보 강화, 교육 필수화, 교양교육 연계⁹⁾ 등 적극적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에는 다양성 및 접근성 사무소(Diversity and Access Office), 성희롱정책사무소(Sexual Harassment Policy Office), 옴부즈 오피스(Office of The Ombuds), 흑인공동체서비스센터(Black Community Services Center), LGBT 공동체자원센터(LGBT Community Resources Center) 등 사건 대응 결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총칙에서 해당 개념을 정의한 다음 이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등 예방의 의무와 상담, 조사, 사건처리 등 대응의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칙에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혐오표현 예방·대응의 의무를 담아낼 수 있다. 단, 사건 처리 절차에 개정이 필요하거나 최소한의 절차조차 마련 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규정 전체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 그밖에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차별행위’가 명시되어 있는 학교도 드물게 있는데, 이 조항의 존재만으로 혐오표현을 차별행위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행위를 채용이나 점수 등 공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분하여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인권침해’ 항목의 예시로 혐오표현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혐오표현에 관한 예방과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적용 및 운영될 수 있는 근거로서 규범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교본부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본부의 의지가 충분한 경우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은 「평등 정책」이나 「차별금지선언」 등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대학의 사례들처럼 학내의 가장 상위규범에 해당하는 정관에 포함되거나 그와 비슷한

9) 2019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연구용역보고서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에 서술된 인권/성평등 교육의 발전적 방향 중 교육 활성화 방안을 참고했다.

위상의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본부가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이나 자원 부족 등 여타의 이유로 학내 규범화에 소극적인 경우라고 해도 학생이나 직원의 주도, 혹은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와 같은 학내기구의 주도로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규범화 방안이다.

(1) 인권규범 제정을 통한 차별시정기구 신설, 전용 규정 마련

먼저, 학교본부가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상위규범인 인권규범 혹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시키거나 연계하여 충분한 규범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인권규범에 혐오표현을 비롯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으로 차별시정기구를 명시하여 기존의 학내기구에서 포괄하지 못한 혐오표현 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전용 규정을 마련한다.

이 경우 학교의 교육이념과 구조, 학사운영 전반을 서술한 정관에 인권규범을 포함시키거나 연계하는 것이 정관의 위상과 맞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학내외 여론이나 예산 등 복잡한 의결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반면 그만큼 본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인권규범 제정을 통한 학내기구 규정 개정(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규정 또는 조항 신설)

(1)과 같이 인권규범을 정관에 포함시키거나 연계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학내기구를 차별시정기구로 지정하고, 기존의 규정에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관련 조항만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인권규범의 규범력이 담보된 상태이므로 추가된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 또는 조항이 실질적인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내기구 규정은 학내 하위 규범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관한 규정 또는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관과 같은 상위 규범에 명확한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1)과 달리 여기서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있는 학내기구 규정을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하여 혐오표현 예방·대응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학내기구 규정 개정(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규정 또는 조항 신설)

상위 규범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학내기구의 규정에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관련 조항만을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는 정관을 개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권 규범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학내에서 이미 상담이나 사건 처리 등 실무를 맡고 있는 기구의 규정에 혐오표현이 명시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인권 이슈에 대한 수용이 더딘 한국 대학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과 (2)에 비해 규범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그만큼 학교본부의 공적 선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학내기구가 학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위에 있거나 기관 혹은 규정 자체가 부재한 경우를 포괄하지 못한다. 기구나 규정 자체가 미비한 대학에서 혐오표현 예방·대응의 제도화를 꾀한다면, 전담 기구의 지위와 규범의 위상을 보다 상위에 위치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절한 위치성을 확보했을 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안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범화 방안을 시도할 수 있는 대학 외에, 학교 본부의 무관심이나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혐오표현 예방·대응이 제대로 제도화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학내 구성원 간 혐오표현 예방·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학생회는 학생자치의 영역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가며 혐오표현에 관련된 자치규약을 마련할 수 있고, 동아리나 학내 모임에서도 자치규약이나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등한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다.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등 학내 기구가 있다면 혐오표현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규정만으로 혐오표현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이는 학교본부의 책임 및 역할 공백을 채우기 위한 일인 동시에 그 자체로 학교본부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4.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혐오표현,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혐오표현이 소수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상으로도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대응할 근거는 분명히 있으나, 여전히 혐오표현이 잘못된

행위임을 규정하는 선언 혹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혐오표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혐오표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해서 좌절을 겪고, 다수 정치인 또한 지지율에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차별 문제에 대해 함구하면서 우리 사회 내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적인 대응이 난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 또한 문제적이다. 계속해서 보수·기독교 세력의 주도 아래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전유되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되는 현 상황에서 혐오표현의 문제를 자율적 해결의 영역에만 둘 수는 없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혐오표현의 경우, 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실행에 있어 더욱 고초를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혐오표현을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법의 필요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에서도 나타난다.¹⁰⁾

따라서 국가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항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혐오표현 규제를 통한 법익을 명시함으로써, 혐오표현을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는 사회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차별 문제와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는 이원화된 법률이 필요하다.¹¹⁾¹²⁾ 차별금지법은 학교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뿐 아니라 차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도원리가 될 것이며, 혐오표현 규제법은 그 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혐오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한편, 법률을 통해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맥락을 보았을 때, 표현의

10) 김수아, 김민정, 이동후, 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p.214

11) 차별문제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로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은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12) 차별을 규제하는 법안과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의 규제 대상과 규제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각의 문제가 차별-평등 의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떨어진 문제로 볼 수는 없으나, 차별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차별과 배제 행위 등을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혐오는 감정과 표현의 영역에 더 가까워 법적 개입에 세밀함이 요구된다.

자유를 침해받아온 역사가 분명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이 잔재하는 가운데,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모호하거나 과하게 포괄적일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법안은 혐오표현의 정의¹³⁾를 명확히 하여 혐오표현의 해악을 설명하고 혐오현을 둘러싼 논의를 확장시키는 토대로서 마련하되,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혐오표현 규제 근거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또한 대응 가능할 것이다. 단,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경우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못지않게 그 과급력과 위협이 큰 동시에 익명성과 접근 및 전파의 용이함 등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보완적인 법률이 함께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대학이라는 실제적인 공간을 또 하나의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의 대응 노력도 함께 명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을 상술한 바와 같이 주장하는 한편,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각 주체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자율규제를 통해 교육기관, 기업 등의 주체들에게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각 주체들의 혐오표현 대응 책무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혐오표현의 근절과 예방은 단순히 입법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학교와 기업 등의 주체들과 나아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논의를 지속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

대학은 학생들의 실제적 삶의 공간이자, 학생들이 관계를 맺어가고 소속감을 느끼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가 평등하고 안전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수자를 공동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저해하는 등,

13) 혐오표현이 대상집단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며, 소수자 집단 형성의 역사성을 반영한 결과물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남성혐오' 혹은 '백인혐오' 등이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과 층위가 다름을 충분히 설명하고, 혐오표현의 해악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대상집단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표현뿐만 아니라, 제삼자를 향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언행 또한 표현의 영역에 해당됨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학 사회 내에 끼치는 해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다. 대학 서열화 문제와 더불어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취업률로 쏠리면서, 대학이 ‘취업기관’으로 전락하고 대학 당국 또한 공동체로서의 대학을 존속하기 위한 책임과 노력을 저버리는 상황들이 목격되는 가운데,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 당국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학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법률적 개입이 반드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다. 제·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부 계획을 구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대응은 대학의 의무 이행과 자율규제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첫째,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고등교육기관이 주체가 되어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 차별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고, 목격하는지, 또는 해당 표현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등의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더불어 고등교육기관 당국에 혐오표현과 관련된 사건 신고 접수가 얼마나 되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의 내용을 실태조사 보고서에 포함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대학 차원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고등교육법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인권센터의 지위, 구성, 의무, 권한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 인권센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권센터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지위가 보장되고, 학내의 차별 문제를 사전/사후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며,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권센터의 설치는 대학 당국이 책임 주체 중 하나로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정보통신서비스 영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1조는 이 법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그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혐오표현은 구조적 차별 속에 위치한 소수자를 공격하고,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 속 혐오표현은 소수자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법의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혐오표현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만 한다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온라인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해 규제를 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중 다음의 조항에 관한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혐오표현을 명시적으로 열거할 것을 제안한다.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에 직면한 소수자 개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관한 인식이 미흡한 지금의 사회에서는 혐오표현 피해자의 삭제요청(제44조의2)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 또한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혐오표현 규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한 바 있다. 이 기본법에 근거해 정보통신망법에 혐오표현이 “타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함을 명문으로 정함으로써 혐오표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제44조의7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에 대해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44조의4 제2항은 불법정보 유통의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 집단 전체를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갖고, 나아가 대중이 소수자를 차별하도록 선동한다. 혐오표현이 갖는 사회적 해악은 제44조의7이 불법정보로 이미 정하고 있는 음란한 정보·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바목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심의 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혐오표현의 해악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행정부가 제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표현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358호, 2020. 12. 10. 시행)에서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환경은 구성원은 제한적인 반면 혐오표현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책임자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해 혐오표현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에게 혐오표현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방통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혐오표현이 누구에 의해 얼마나 많이 발화됐는지,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신고나 삭제요청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모니터링 인력이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을 실시했는지, 직원들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얼마나 자주 제공했는지, 혐오표현의 토대가 되는 구조적 차별과 편견을 시정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가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등을 혐오표현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다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별도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안들이 실제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적용이 되어도, 심의 제재의 주체가 되는 방심위가 혐오표현의 정의, 맥락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집행을 지속한다면 개정안의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방심위 주체의 혐오표현 규제가 차별과 혐오표현 문제에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 형성적 규제

혐오표현 대응에서의 형성적 규제란 혐오표현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공익광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형성적 규제는 사전적, 촉진적, 비사법적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이고 규제적인 형사

차별과 대별된다. 혐오표현의 본질이 결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차별이라면, 교육과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차별을 관용하지 않는 시민사회는 규제 없이도 혐오표현을 사회의 경계 바깥으로 밀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형성적 규제는 이를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술한 규제 방안들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본 발제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혐오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형성적 규제 또한 대학 등 교육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표현이 만연하게 된 원인에는 혐오표현이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적 맥락도 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그 어떠한 부분도 혐오표현이 ‘잘못’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인은 놀이거리처럼 커뮤니티에 혐오표현을 발화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의 전반적인 부재는 이러한 표현들이 확산되고 재생산되는 구조를 가져왔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이용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준다면, 커뮤니티 내에서 학생들에 의한 자정 작용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안은 교육책임자 등의 의무를 다루며 “국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 내에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혐오표현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형성적 규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31조를 근거로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 혐오표현 교육을 기존의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교육, 인권교육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에도 혐오표현 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그 예방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대학을 포함한 많은 공동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사실상 공론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빠르고 즉각적으로 정보와 메시지가 전달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특수한 양상은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해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불어 대학이라는 실제 공간을 주요한 토대로 삼고 있어 혐오표현의 해악이 온오프라인 공간을 가로질러 작용하는 등, 대학사회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의 등장 이후 많은 혐오표현의 해악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조항과 혐오표현 문제의 심각성 인식의 부재는 혐오표현 대응의 실패로 이어졌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학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평등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혐오표현의 규제뿐만 아니라 학내의 차별·폭력 문제에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후적인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까지 혐오표현 해결의 영역에 확장하여, 대학사회 내에서 혐오표현과 차별 문제를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당국도, 학생 자치 단체도 혐오표현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마저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선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선언하는 역할로써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근거 법안의 입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주체를 호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발화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국가와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시정 노력과 형성적 규제를 통해 혐오와 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선언적 의미로서의 입법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높이고, 혐오표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것을 국가·사회적인 과제이자 책임으로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나아가 주요한 책임 주체의 시정 노력을 강조하고 자율규제를 촉발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혐오표현 규제를 표현의 자유의 제한 내지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로 해석하는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혹은 개인을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배제한다는 해악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 대상 집단 혹은 개인의 발언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 혹은 개인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권이지만 특정 집단 구성원의 배제나 구별, 충돌의 행위를 막기 위해 다수의 권위에 제한을 두는 행위는 민주주의 신념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¹⁴⁾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나, 동시에 혐오표현 규제를 통해 혐오표현 대상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 규제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혐오표현 규제가 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평등을 도모하고,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면 규제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4) 위의 논문, p.154

토론1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

홍익대 유학생위원회(신해강)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



홍익대 유학생위원회(신해강)

1. 들어가며

- 홍익대학교 유학생 위원회에 대한 소개: 국내 생활 부적응, 내국인 유학생과의 마찰, 행정적 불편함, 등록금 인상 문제 등 해결을 목표로 함.
- 중국인 유학생 위주로 리서치하였음.

2. 서론

-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의 갈등이 문화적이고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집단에 대한 혐오에 기원한다고 언급.

(1). 갈등이 나타난 배경

- 미세먼지 문제와 사드 설치에 관해 중국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음.
-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대학에 붙고, 이를 훼손하는 집단이 등장하여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됨.
-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중국 내륙이 지목되자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혐오가 퍼짐.

- 대면 강의가 화상 강의로 대체되며 직접적인 갈등 상황은 거의 없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과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력해짐.

(2). 현황

- 에브리타임에서 유학생에게 혐오를 표출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로 여겨짐
- 반면 게시글의 혐오성 내용과 혐오 표현을 지적하는 글은 줄어들음.
-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내국인이기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갖지 않는 유학생들은 커뮤니티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유학생들이 글을 올리면 혐오자들에게 공격받음.
- 혐오자들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타집단의 구성원들을 배제하여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려 함. 악질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예를 들면, 천안문 항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들을 던짐으로써 건전한 대화를 불가능하게 함. 결국 유학생 이용자들은 이탈하거나 글을 올리지 않는 유저가 되고 유학생에 대한 논쟁은 허수아비 때리기식으로 전개됨.
- 이러한 현상은 비단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을 향한 때에도 나타나는데, 가령 혐오자가 타 캠퍼스에서 전과해 온 학생을 비난하며 '조선족보다 무서운 세종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타자에 대한 혐오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남.

3. 본론

(1). 개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①. 조별과제

- Li qianqian씨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 중 40%가 수업 시간 외에 한국인 학생과 접촉한 적 없고, 25%가 한국인 학생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함.
- 홍익대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신이 차별받았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55%,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30%로 나타남. 그러나 조별과제 중 팀원이 자신을 꺼리거나, 차별받았다고 느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남.
- 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는 것과 달리 조별과제는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필수적이고 일시적인 협업 과정이기 때문임.
-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조별과제 수행 과정에 주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자신이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맡고 싶었던 역할에서 배제했다.", "자신의 의견과 자신이 낸 결과물이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조별과제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약 32%로 나타나 적어도 유학생의 세 명 중 한 명의 학생이 조별과제 과정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②. 에브리타임

-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고 학생 간의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짐. 유학생을 공격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자주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댓글로 공격적 반응을 보임.
- Q. 실력이 떨어지는 유학생 친구를 돕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 A1. XX 패야 한다. (비속어가 섞인 답변)
- A2. 유학생과 팀플 걸리면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비속어가 섞여있진 않지만 편견이 담겨있는 글)
- 유학생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음. 한 학생은 "유학생과 소통한 경험이 없는 내국인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나치게 혐오를 퍼뜨리고 있다."고 응답하며 걱정을 보임.

③. 교원들

- 이들 또한 편견을 갖고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교원들은 유학생들과 위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편견을 지적하기 쉽지 않음.
- "교수님의 차별적 언행이 불편했다."고 답한 학생이 63%, "교수님의 민감한 질문이 불편했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70%에 달해 문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2).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 내국인 학생들이 유학생을 조롱하거나 그들의 출신국을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 특히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0%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한 유학생은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함.

①. 한푸 논쟁

- 배경: 한푸 부흥 운동이 2000년대 초부터 중국에서 벌어짐. 만주족의 전통 복장인 치파오가 중국의 전통 복식으로 소개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명나라, 즉 한족의 복식인 한푸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그런데 이들 중 극단주의자들은 동북공정의 논리를 적용하여 한복 또한 중국의 복식임을 주장함.
- 한 유학생이 한복과 한푸를 혼동하여 소개함.
- 이로 인해 논란이 생기자 다른 유학생이 이에 대한 해명글을 올림.
- 그 유학생에 대한 사이버불링이 시작됨.
-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간의 상호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혐오만 쌓임.
- 뿐만 아니라 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수업 도중 "중국이 구제역의 발원지이다.", "일본의 물건을 사면 안 된다."의 논조로 중국과 일본을 강하게 공격했는데, 이를 듣고 불쾌함을 느꼈다고 함. 또한 이 학생이 발표를 하던 도중 "중국의 전통 문화는 그냥 싫어." 라며 수근대는 소리가 들렸음. 이에 학생은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고 함.

②. 에브리타임

-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학생이 자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따져 불편함을 느꼈다는 답을 한 학생이 10% 존재함.
- 한 내국인 학생이 게시한 글에 따르면 "오늘 술자리에서 중국인 학생에게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학생이 중국의 것이라고 우겼다. 그 에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가 나빠져 다들 1시간만에 집에 돌아갔다."고 함. 그 학생의 견해가 자신과 다르거나, 옳고 그름을 떠나 서로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집단에 대한 혐오 때문에 다름에 대한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할 뿐더러 이러한 문제는 대화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집단에 대한 혐오의 경우에는 약자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문제이고 그럼에도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3). 행정적인 차별

- '교수님들은 유학생들에게 불공정하게 점수를 책정한다.!' 일부 조교들이 유학생들에게 매우 불친절하게 대한다.' 등의 응답률이 절반 이상 나타남.
- "한국인 학생들의 취업에는 학점이 중요하지만, 유학생들에게는 그러지 않으므로 유학생에게는 낮은 점수를 줘야한다."고 양해를 구했다는 교수와, '학교에 방문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무조건 F를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교수가 있다는 응답을 받음. 또한 입학 확인서를 늦게 받아 입학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유학생이 조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한 사례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유학생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침이 정립되어있지 않고, 유학생들에게 차별이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학생들이 가장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장학금'이었음. 모든 응답자가 학비가 올라서 곤란하다는 응답을 함. 특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학비는 2020년 2학기 기준 4,492,000원인데, 이는 2018년부터 동결되어 있었음. 그런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2019년 1학기에 4,716,000원이었던 학비가 2020년 1학기에는 4,952,000원으로 증가하여 약 10%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학교 측에서는 이를 불가상승률과 타 대학의 동향 등을 조사해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일한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의 입장에서 입학 전형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업료를 더 걷어가는 것은 차별이라고 느껴질 수 있음. 특히 이는 유학생들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아 많은 유학생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음. 이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게 되거나 시간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음.
- 행정상의 차별은 실제 내국인 학생들과 교원들로 하여금 그들 개인이 갖는 편견들, 즉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유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내국인 학생들 또한 유학생과 소통하며 새로운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데 편견과 혐오로 인해 그 기회를 잃게 됨.
- 한 유학생은 '대부분의 중국인이 학교에서 거의 어떤 조직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어 문제를 제외하고는 학교 측에서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함.
- 그러나 언어 문제 또한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실제로 조별과제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내국인 학생들과 유학생이 존재함. 이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이 낮기 때문임. 현재 대학교 입학 기준은 TOPIK 3급 취득 혹은 2급 취득 후 한국어 교육 이수임. 그러나 TOPIK 3급 자격이 실제로 학업 수행 능력이 있음을 보증하고 있는지, 또한 내국인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자격인지에 대해 유학생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4. 결론

- 코로나 블루로 많은 청년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는 것은 일상이 됨.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코로나로 인한 생계불안, 우울함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어 혐오의 장으로 변모함.
- 혐오 게시글이 빈번히 인기 게시글(HOT 게시글)이 되고, 이 게시글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PC충(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올바름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함.
- 많은 학생들이 에브리타임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고 에브리타임을 사용한다고 말하기 부끄러워함.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기울어진 공론장이 되었기 때문임.
- 정은경 관리본부장은 "특정 환자, 지역, 집단에 대한 혐오는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실제로 차별과 혐오는 당장의 전염병 극복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회 발전과 진보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음.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곳이 아닌, 다양성이라는 가치 하에 연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임.

토론 2

온라인커뮤니티(에브리타임) 이용자 경험 실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모색

청년참여연대(조희원)

온라인커뮤니티(에브리타임) 이용자 경험 실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모색¹⁾

청년참여연대(조희원)

들어가며

-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이 경험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청년문제로 확장하고, 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직접행동, 캠페인, 이슈과이팅을 진행하는 청년단체임. 2020년 청년참여연대는 ‘젠더’ 문제의 하나로 20대 대학생 대다수가 사용 경험이 있는 에브리타임(대학생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성 게시물에 주목함.
- 에브리타임은 전국 약 400개 대학의 454만 대학생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임. 에브리타임은 인증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어 있고 직접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함. 모든 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됨.
- ‘에브리타임’은 학내 구성원간 정보교류의 장에서 나아가 혐오표현 발화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익명성에 기댄 악성댓글과 공격적인 게시글로 사이버불링의 장이 되기도 함. 특히 여총학생회 출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문제 등 대학가 이슈는 물론이고 난민, N번방 사태,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방하는 익명의 혐오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음.
- 에브리타임 상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대학인권센터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에브리타임 이용자가

1) 본 문서는 2020년 11월 2일에 발행한 청년참여연대 이슈리포트<‘에브리타임’ 내 혐오표현 관련 이용자 설문과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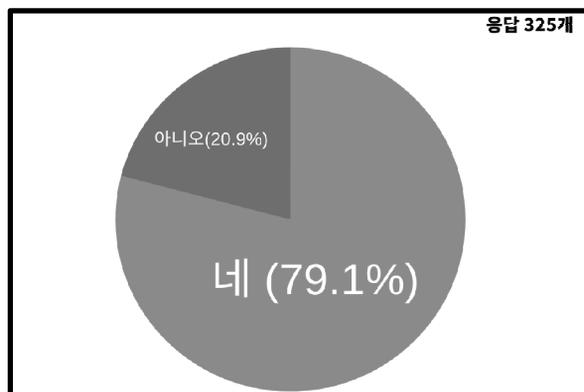
모두 같은 대학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학내 커뮤니티라 할 수 있으므로 대학 당국은 혐오표현과 악성댓글에 노출되는 학생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에브리타임 대학생 이용자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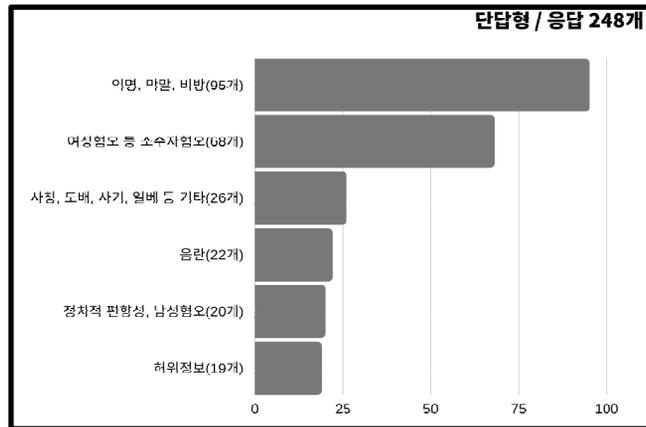
- 청년참여연대는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상으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혐오게시물에 대한 실태 파악 설문>을 진행함
- 설문 문항은 △에브리타임 사용 여부 △용도 △이용중 불편감을 느꼈는지 여부 △불편감을 느낀 이유와 유형 △게시물 신고 경험 여부 △게시글을 신고한 이유와 신고하지 않은 이유 △에브리타임 이용규칙 개선을 원하는지 등으로 구성함.
- 설문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325명 중 321명이 '에브리타임을 이용 중이다'라고 답했고, 이용 목적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 시간표 사용과 강의 정보획득이 각각 272명(83.7%), 227명(69.8%)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취업 정보 및 할인 등 학교생활에 대한 팁을 얻기 위해 103명(31.7%), 커뮤니티 이용을 위해 사용한다는 대답도 90명(27.7%) 있었음. 이 외에 에브리타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에브리타임 이용 현황

1-1. 에브리타임 이용 도중 불편감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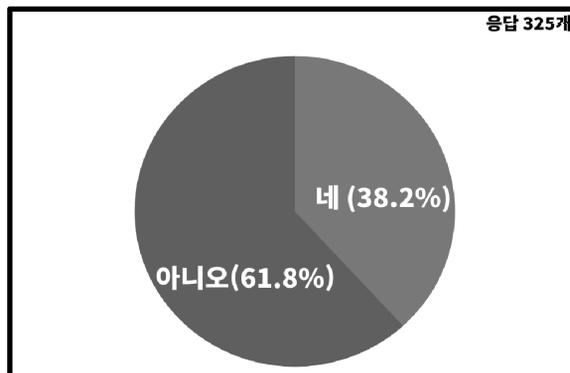


1-2. 불쾌감을 느낀 이유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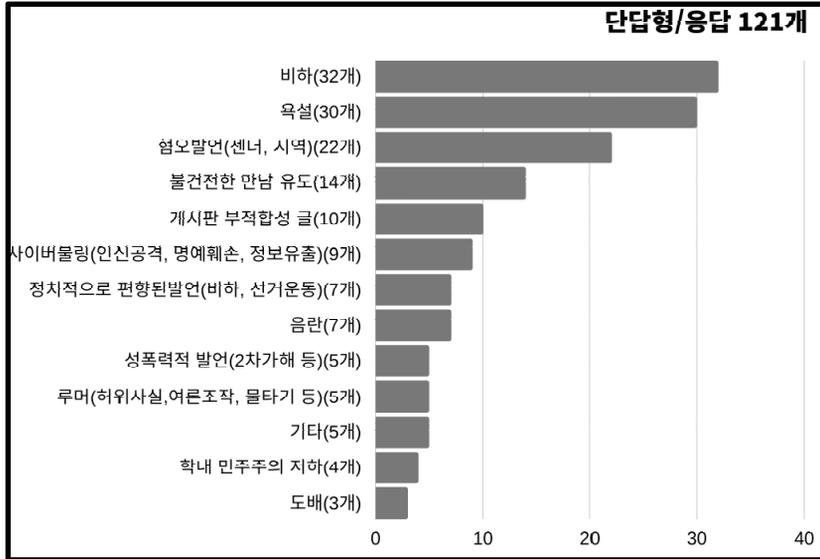


2. 에브리타임 게시글 신고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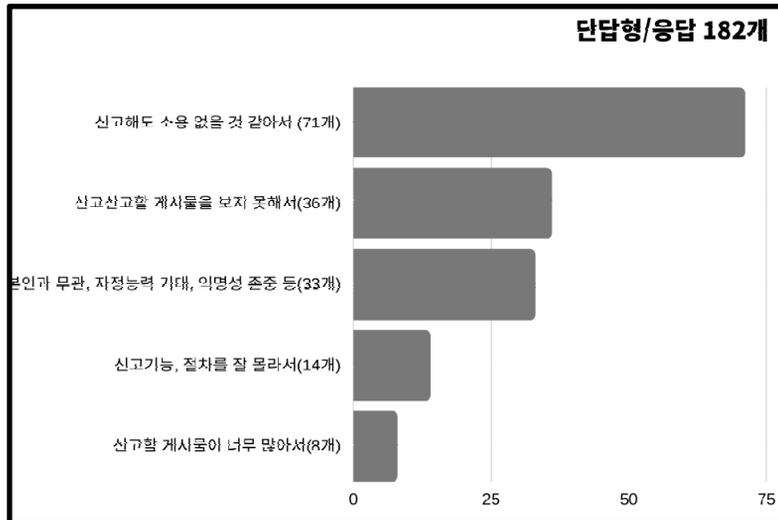
2-1. 이용자 325명이 에브리타임 게시글 신고해본 경험의 여부



2-2. 게시물 신고의 이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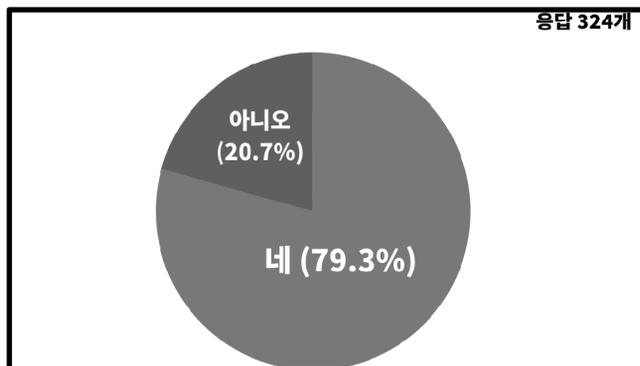
2-3. 게시글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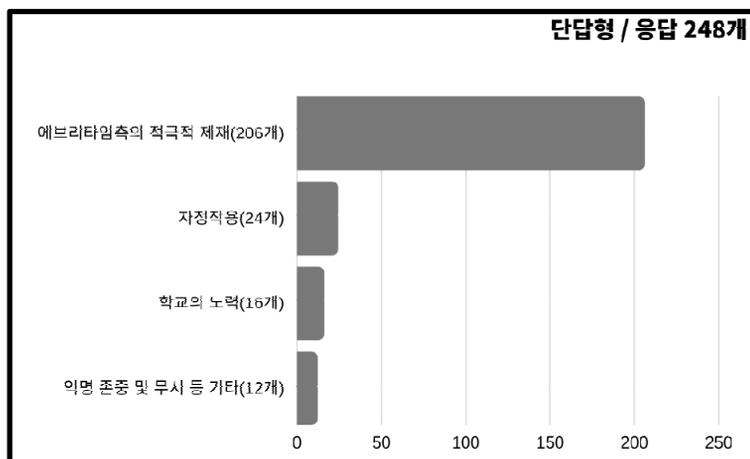
3. 에브리타임 이용규칙 개선에 대해서

3-1. 에브리타임 이용규칙 개선 동의 여부

- 에브리타임의 이용규칙에 따르면 모든 게시물은 이용자의 신고처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됨. 신고가 누적된 게시물은 내용과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고, 신고된 이용자는 게시판 사용이 제한된다. 신고자와 신고사유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해당 게시물이 왜 누구로부터 신고를 당했는지 알 수 없음.
- 위의 에브리타임 이용규칙에 대해서는 무응답자 1명을 제외 전체 324명 중 257명(79.3%)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함.



3-2. 개선방법 유형



4. 에브리타임 이용자 실태 분석 요약

- 이용자의 79.1%가 에브리타임 이용 도중 불쾌했던 경험이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익명·막말·비방 (248개의 답변 중 95개), 두 번째는 여성혐오 등 소수자혐오(68명)이었다. 또한 이용자들이 에브리타임 게시물 중 가장 신고를 많이하는 유형은 비하·욕설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은 젠더, 지역주의 관련 혐오 발언 게시글이었음. 그러나 사실상 게시글을 신고해본 경험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용자는 38.2%, 신고해보지 않은 이용자는 61.8%였음. 신고하지 않은 이유 1위는 ‘소용 없을 것 같아서(답변 71개)’였음. 또한 에브리타임 이용규칙 개선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79.3% 비율의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개선 방법으로는 ‘에브리타임측의 적극적 제재(206명, 83.1%)’가 필요하다고 한 답변이 가장 많았음.
- 에브리타임 이용자의 다수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혐오발언과 비방글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특히 ‘여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많은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음. 이 외에도 학내 구성원 간에 인신공격, 명예훼손, 정보유출 등의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는 글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하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대학생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음.
- 이용자 다수는 에브리타임의 현재 이용규칙과 신고 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답했음. 에브리타임은 이용규칙과 함께 ‘신고처리 시스템’²⁾이라는 최소한의 제재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용자들 다수는 ‘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현재 에브리타임의 제재 방식은 혐오 게시글을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사실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신고처리 시스템 1. 모든 게시물은 이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신고처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2. 커뮤니티 이용규칙을 위반하거나 신고가 누적된 이용자는 작성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의 글쓰기 제한, 접근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3. 모든 처리는 신고처리 시스템을 통하므로, 신고자 및 신고 사유를 확인하거나 접근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신고가 누적되면 접근 제재를 당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신고당했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고, 기준 또한 이용자 중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학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결과

1. 정보공개청구 대상

- 온라인을 포함해 학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학인권센터의 예방 및 해결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센터가 설립된 전국 64개 대학³⁾에 8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 해당 학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개최했던 학교들로, 지금 그 수는 더 늘어났을 수 있음. 이 중 정보 비공개 처분한 2개 학교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3개 학교와 정보부존재 처리한 1개 학교를 제외하고 58개 대학 기관의 회신 내용을 정리하였음.
- 질의 내용은 대학인권센터가 에브리타임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해결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학내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내용, △이 외에 전반의 학내 인권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의 공개 등이었음.

3)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순천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초당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 정보공개포털 상 정보공개청구처리기관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이메일로 질의를 진행하였다.

*중앙대학교, 국민대학교는 질의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따른 세차례 질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통지하여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성균관대학교, 세명대학교, 위덕대학교는 정보공개청구에 아무런 응답/회신을 하지 않았다. 대전대학교는 회신하였으나 정보부존재로 응답했다.

1. 귀 대학의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1) 최근 3개년 동안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신고 건수
- 2) 최근 3개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 상(에브리타임, 학내게시판, 단톡방, SNS 등)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신고 건수
- 3) 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의 전체 신고건수 (연도 별 건수)
- 4) 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와 각 건수 (예시: 합의권고 3건, 구제조치권고 1건, 징계요청 2건 등)

2. 귀 대학의 인권센터는 인권 성평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5) 최근 3개년 동안 시행된 인권·성평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시점과 주기, 교육 대상자의 범위
- 6) 위 교육자료 및 내용에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혐오발언 예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7) 최근 3개년 간 실시된 인권·성평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 일체

3. 귀 대학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8) 최근 3개년 동안 시행된 학내 인권실태조사 시행 시점과 주기를 포함한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 일체

2. 정보공개청구 결과

• 최근 3년간 에브리타임 상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와 각 건수

관련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공개 한 58개 대학 중, 에브리타임 상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을 접수해 조치한 적 있다고 답한 학교는 7개 대학뿐이었고 사례는 총 9건이었음.

| 대학 | 건수 | 조치내용 |
|-------|-----------------|-----------------------------|
| 강원대학교 | 1건(2019년) | 구제조치권고 |
| 계명대학교 | 3건(2019년) | 징계요청 - 2건, 조정중재 -1건 |
| 대구대학교 | 1건(2019년) | 양자합의 |
| 부산대학교 | 1건(2018년-2020년) | 징계요청 |
| 인제대학교 | 1건(2019년) | 진행중 |
| 평택대학교 | 1건(2019년) | 피신고인을 찾을 수 없어 신고인이 사건 취소 요청 |
| 한양대학교 | 1건(2019년) | 징계유보(수사기관 증거 및 결과 확보가 될때까지) |

• 대학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학내 인권실태조사 여부

정보공개청구에 응답한 58개 대학 중 총 22개의 대학만이 주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31개 대학은 시행하고있지 않고 있었음. 나머지 대학들은 해당 항목에 무응답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비공개 처분하여 포함되지 않았음.

| | |
|-------------------------------|--|
| 실시함 (22개교) |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
| 실시하지 않음 (31개교) | 가톨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순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여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

-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개최하는 학교는 모두 1년에 2차례 이상 성희롱·성평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 자료는 대부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확인해 본 결과 교육 내용에 ‘카톡방, SNS에서 일어나는 2차 피해’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발언을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3. 대학인권센터 정보공개 결과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대학인권센터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62개 (2019년 11월 기준)로 과거보다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보공개청구 결과 기본적인 학내 인권실태조사와 같은 기본적 조사조차 수행하지 않는 대학이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대학인권센터에 접수된 ‘에브리타임’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7개 대학에서 총 9건 발생했음. 이 중 두 건은 피신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증거확보가 안된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았음. 에브리타임 이용자 약 80%가 혐오표현이나 악성 댓글 등으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는 실정임에도 대학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수가 이토록 적은 것은 이미 앞의 이용자 설문 응답에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익명 게시판 특성 상 글쓴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실제로 에브리타임 게시물 관련하여 사건 신고가 들어와도, IP추적 및 가해자 확인은 에브리타임에서만 확인 가능하기때문에 경찰 수사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기타의견도 있었음. 또한 그동안 대학인권센터가 에브리타임 상의 온라인 인권침해 사례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학내 구성원에게 인지되어 있지 않고 실제 그런 역할을 한 사례도 적었기 때문임.
- ‘에브리타임’ 이용자가 같은 대학 구성원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야함. 게시물 작성자는 모두 같은 대학 공간에 속해있고, 가해와 피해의 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장으로 옮겨간 것일 뿐,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
- 온라인 상 구성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학의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대학은 자체 온라인 커뮤니티의 장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2011년에 출시된 사기업 ‘에브리타임’이 전국 약 400개 캠퍼스 커뮤니티를 장악함. 엄연히 대학 내 게시판 등에서 작동하던 커뮤니티 기능을 일반 사기업에 전가한 것임. 따라서 더이상 에브리타임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와 더불어 온라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대학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함.

마치며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람 간 물리적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소통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함. 온라인 사이트와 앱 등은 소통 수단이자 장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교육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온라인 방식이 전통적인 모임과 만남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 온라인 모임 등이 대폭 확대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과 온라인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은 이용자 다수가 익명성 막말과 혐오표현 등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옴.
-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 내 혐오 발언 게시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브리타임 기업 측과 대학 측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물론 커뮤니티 구성원의 자정노력도 필요함. 이용자 다수가 응당한대로 지금의 신고체계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용규칙이나 시스템 상에 최소한의 평등문화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에브리타임이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여 사실상 학내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문제해결과 예방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학 측도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함. 대학 내 의무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게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고,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함. 학생 기본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할 의무가 생긴 것임. 그러나 학생 인권이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지 않음. 에브리타임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해결 방안을 고안하여 구성원들이 대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방을 위한 필수교육과 학내 캠페인도 필요함.
- 앞으로 온라인 소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상황에서 에브리타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단순 돈벌이로 보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의 외면을 피하기 어려움. 대학 당국 역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토론 3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학생자치기구 역할과 책임

- 시민성 관점의 학생자치기구 역할 전환을 중심으로 -

예술대학생네트워크(박주현)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학생자치기구 역할과 책임

-시민성 관점의 학생자치기구 역할 전환을 중심으로-



예술대 학생네트워크(박주현)

들어가며

-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을 통해 드러난 대학 내 차별, 혐오의 일상화는 현재 대학 내 건강한 공론장과 대학 구성원 간 공통감각의 부재로 기인한다 판단함.
- 위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학이라는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혐오표현의 해악이 오프라인의 경계를 가로질러 작동함. 현재 관리 및 감독 책임 주체가 부재한 온라인 공간과 이를 넘어 대학구성원의 책임과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시민성 관점의 학생자치기구 역할을 제언하고자 함.
- 본 토론문은 2020년 청년허브 공모형 연구사업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선정 연구로 토론자를 포함한 전현직 학생회 경험자, 특별자치기구 활동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 7인과 함께 작성된 <시민성 관점에 근거한 차세대 대학 학생회·학생자치 모델을 위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가공한 것임.

1. 시민성 관점에서 학생회·학생자치 활동 접근

○ 학생자치 활동에 있어 시민성 관점이 필요

- 00년대 이후, 동원 운동 중심의 학생회에 대한 반감으로 등장한 복지·민원 중심 학생회는 학생자치의 순수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배후에서 보수정권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은 문제가 있으며, 학생회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서비스, 민원에 집중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공간을 열지 못하고 서비스화한 문제의 원인이 됨.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감소시키고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함. 이는 오늘날 학생회가 겪고 있는 타자화, 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점의 원인이 됨
-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새로운 학생자치 활동은 운동 중심 학생회의 민중운동의 ‘체제변혁’도, 복지·민원 중심 학생회의 ‘포퓰리즘’도 아닌 ‘시민성’ 관점의 고려가 필요. 시민성(Citizenship)은 공화 민주주의 개념에 근거하며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상정하는 한편, 공동체 내에서 모든 존재들의 적극적인 평등의 실현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

○ 학생자치 참여 경험이 민주사회의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해당 연구와 지원은 초·중·등 교육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 서울시는 2015년부터 학생들을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상정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민주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해옴
- 학생자치 참여가 미치는 시민성 함양에 관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았으나, 연구 대상이 초·중·등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고등교육에 주목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한국 사회에서 과열화된 입시 경쟁으로 유예해 온 존재자로서 고민과 사회에 관한 관심을 탐구할 수 있는 시기이자, 본격적인 사회인이 되기 전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공간임.
-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민주사회의 시민성 함양의 관점에서 대학의 학생자치 활동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공공성 관점에서 학생회·학생자치 활동 접근

- 공공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임
-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단순히 사회 다수의 이익보다 사회의 정의·평등·공익 등의 가치 등의 관점을 고려한 개념으로 이해됨
- 학생회가 흔히 선거나 활동 등에서 활용하는 수사인 ‘모두를 위하여’는 학생들과 학생 사회라는 공동체를 가정하고 이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즉, 공공성을 위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음
- 공공성은 공공 영역과 관련된 개념으로 공공 영역은 개인이 이루는 사적영역이 아닌 공동체의 영역을 의미함
- 정치는 본래 의미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및 관계 방식을 통칭하며 집행력 (Power)와 덕(Virtue)의 조화로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
- 행정과 법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내 상호의 이해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지향함
- 학생회는 학생사회의 법 즉, <학생회칙>을 기반으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 받고 학생들로부터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으며 필요할 경우 회칙을 비롯하여 각종 내규를 통하여 강제할 권한 역시 가지고 있음. 결국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제를 다루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학생사회는 학생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공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 영역의 공론장에서 다양한 정치가 일어남
- 오늘날 학생사회의 공론장은 SNS로 과대대표되고 건강하지 못한 공론장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참여학생회의 폐지 등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이는 학생사회가 사회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해 볼 때, 오늘날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3. 오늘날 학생회 활동의 어려움

1) 건강한 공론장의 부재

- 단편적·파편적인 의견 개진 혹은 익명 커뮤니티 사용 외에는 공론장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 및 대학 공동체에 편입되면서 상호 토론 및 숙의를 통한 공론 과정의 필요성, 효과성을 체감하지 못함
- 상호 존중이 보장되는 건강한 공론장의 부재는 학생사회가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 하게 하며 구성원 공동의 숙의가 생략된 채 특정 방향으로 대표될 위험성이 있음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방식의 특성상 특정 의견, 특정 정치 성향이나 사상 등이 과대 대표 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온라인은 건강한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과도하고 무분별한 혐오 표현과 비난, 사이버불링 등의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음
-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기반한 표출의 장으로만 사용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의 한계로 인해 커뮤니티 내 개별 불만 혹은 문제 제기들은 오프라인 공론장의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대리와의 대의, 대표성에 대한 모순적인 요구

- 학생들로부터 선출을 통해 구성하는 학생회는 대학본부와 학생 대중 사이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위치임. 학생 대중은 개인의 권익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느낄 때, 대표성을 가진 학생회에 해걸을 요청 및 요구함
- 하지만 학생회의 결정 및 입장이 개인의 가치관과 상충한다면 대의를 거부하며 학생회의 책임을 묻는 현상이 발생함
- 대표성을 지닌 입장표명 및 행동을 요구받는 한편, 실질적으로 대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찬반 여론이 팽배하는 사안에 있어 학생대표가 겪는 어려움이 상당함
- 대의민주주의는 선출 이후에는 양심과 자유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자유위임>의 권리를 선출직에게 부여하지만, 학생사회는 실제 자유위임이 작동할 수 없는 모순적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대표적인 예시가 ‘성 소수자 의제 연대의 건’임 연대를 위해 총학생회 깃발을 들고 단체 명의로 쿼어퍼레이드 등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메시지로 찬반 여론 및 비판 여론이 거센 의제 중 하나임. 반대 측의 논리는 개인이 대학과 총학생회에 소속되어 있고 총학생회가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메시지로 보이기 때문에 전원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 학생회가 참여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음
- 또 하나의 사례로 동문 출신 여성 국회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성명을 총학생회 측에서 발표하자 ‘여성네트워크 형성 저해’,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도덕적 검열’이라는 강한 비판과 학생회의 탈정치 요구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례가 있음. 이로 인해 40여 일 만에 해당 성명은 철회되었음
- 이처럼 자신의 권익에 대한 대리자로서 학생회에게 강한 역할을 요구하는 한편, 본인의 신념과 이질적인 입장을 학생 대표자가 낼 때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반하여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기속위임’을 주장하는 논리임
- 기속위임¹⁾은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모든 의사결정 행위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바람직할지 모르나, 지금의 대의제 기반 구조와 학생사회의 한계로 불가능하며 전원 합의의 강요와 다수결이 오늘날 사회에서 덕목으로 요구되는 다양성을 침해하며 이 경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포폴리즘 차원의 정책 및 사업밖에 진행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3) 공통감각²⁾에 기반한 세력화가 되지 않음

-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손익으로 체감하는 학내 노후 환경 및 시설 개선, 등록금 반환과 같은 특정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의 교육권 활동 참여 및 요구가 높은 편임

1) 대표자를 대리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담론임. 풀뿌리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뿌리 조직들 즉, 기층 단위가 탄탄하고 구성원이 성실히 참여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가능한 민주주의임.

2)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공통된 판단력으로서의 상식이나 양식을 이르는 말. 사회적 감각, 연대성 감각, 공동 정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함.

- 반면 직관적이지 않은 포괄적 교육권 운동(총장직선제, 사학 비리 등)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는 낮은 편임. 장기적 방향의 대학 공공성 의제보다는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교육권 의제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편임.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 '취업을 위해 거쳐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청원 제도 및 서명 등 참여의 대중화, 비거니즘 및 탈코르셋 등 일상적 운동의 실천 등 현세대에게 개인의 신념 표출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런 실천 및 운동 역시 파편화 된 채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 혹은 청년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한 공통감각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임

4. 시민성 관점에 근거한 학생자치 방향성

- 학생사회 공공 영역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1) 학생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학생회가 아닌 학생자치의 관점이 필요

-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학생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닌 학생회 속해 있는 학교의 공공 영역인 '학생사회'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해 냄
- '학생사회'에는 학생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며 공공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활동의 공공성을 띤다면 공공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
- 이 개념에 따른다면 '학생회'가 아니라 '학생자치'의 사고가 더 중요해짐

2) 학생회의 대의(代議)에 대한 고찰과 반성

- 학생회는 대의주의가 아니라 '대리주'적인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함. 학생들은 대리를 벗어날 때, 학생회에 대한 타자화 · 소비자화 · 무관심 · 비판을 가함

- 입학하자마자 회원의 권한을 부여받는 학생회의 체제는 "왜 모두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모두를 대표하느냐?"라는 비판의 명분이 되지만 이러한 비판은 학생회의 활동 영역을 좁히고 역량을 낮추어 실효성 없는 학생회를 만드는 문제가 있음
- 선출직은 법학적 개념으로 <자유위임>의 권한을 가져 선출과 동시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이 사이의 교차점에서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좁은 학생사회의 특성,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의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현실적으로 자유위임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대리주의로 흘러가기 쉬움
- 건강한 공론의 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주의는 교차하는 정체성이나 권리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의할 수 있는 대리주의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귀결되거나 분명히 존재하는 소수자를 탄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에브리타임'³⁾으로 귀결되는 건강한 공론장의 부재는 극단적인 의견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로의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3) 거버넌스·공론장의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학생문화 형성

- 학생회에 대한 타자화 및 활동 참여자의 재생산, 학생사회 공공 영역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학생회의 정책·사업·운영도 이제는 학생회 임원들의 Top Down이 아닌, 학생들의 Bottom Up이 필요함
- 오늘날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며, 거버넌스 등의 도입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려는 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관리 합리성 관점에서 <참여적 시민>을 형성하려는 시도이기도 함
- 종합해볼 때, '소극적' 차원의 참여가 아닌 '적극적' 차원의 학생 참여 확대와 구조 마련이 학생사회를 고민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

3) 대학 시간표 기능과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며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 일상적 참여 확대가 전제되어야 학생(사)회에 관한 관심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함. 참여 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 등의 직접민주주의 방법론은 시민(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참여시 책임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음
- 현 학생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안이자 장기적 해결책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 학생회 운영에 있어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양적 조사에서 거버넌스 도입과 공론장 도입에 대해 2,200여 명의 학생들은 각 74%, 82%로 긍정 평가함
- 학생회의 소통·수렴에서 학생들의 직접 참여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생회 활동 전체에 적절한 거버넌스, 공론장 등을 도입하여 더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민주집중제·전공 기반 학생회 체제에 대한 재검토

- 현재의 과/반 학생회 ▶ 단과대학 학생회 ▶ 총학생회의 구조는 일반 학생들부터 전체를 대표하는 학생들까지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나 오늘날 상향식 의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과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때와 달리 오늘날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이외에도 민주집중제는 강한 권한 부여와 함께 과도한 업무부여, 공공선보다는 다수결로의 귀결 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함
- 학과(과 학생회)를 가장 작은 구성단위(기층)로 바라보고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함. 이는 공공의 선보다는 학과나 단과대학의 이권 중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단과대학별 학과의 수 차이 등으로 권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명확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임
- 결국 현재의 학생회 체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의제를 담기 어려운 구조이며 학생회의 타자화와 서비스화는 체제로부터 기인함.

-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5) 1년 임기 중심의 협소한 사고 탈피

- 오늘날 학생회는 과거와 달리 장기 활동 참여가 줄어들고, 영웅주의가 존재하며, 많은 학생의 소비자로서만 권리를 요구함에 따라 1년 단위의 성과 중심 사고가 만연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SNS에서 소비자 권리 주장이 과대대표 되는 것은 학생회의 활동 범위를 위축시키고 1년의 성과 중심 사고를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임
- 학생회의 정책 중 일부는 제도 개선이나 인식개선 학교의 협조 필요 등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음. 1년 중심 사고는 결국 학생회의 활동 범위와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귀결됨
- 결국 1년 단위의 사고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나 운영모델 구축과 건강한 가치를 지향하고 역량 있는 인원들을 계속 재생산 하는 것이 핵심임

5. 시민성 관점에 기반하여 다양한 공통감각을 형성

1) '갈등'·'불화'·'협약'이 민주주의의 본령임을 인정

- 오늘날 학생사회 및 학생회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회는 늘 타자화되어 책임을 요구받음
- 선행 연구의 정치철학에서 살펴본 대로 갈등과 불화는 그리고 협약은 민주주의의 본령임
- 에브리타임 등의 공론장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같은 심각한 갈등 문제들에 대해서는 SNS의 감정 표출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을 여는 것이 정치기구로서 학생회가 해야 할 일임

- 한편 학생회가 갈등과 불화를 억지로 봉합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치기구이자 집행력을 가진 조직으로서 학생사회의 공공 영역을 해치는 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함
- 결국 학생사회 및 학생회를 둘러싼 갈등들을 해결하려면 학생들의 정치체제로서 학생회를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목표 아래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이들에게 공통의 것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감각 혹은 공통의 감각을 증진해 공공 영역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함

2) 학교 구성원·대학생·시민으로의 공통감각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 지향

-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청년 담론은 단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질서와 가치관에 의문을 던지고 청년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중점으로 공통감각을 형성하여 공공 영역을 재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 학생회가 속해 있는 학생사회에서 일어나는 직간접적인 문제들은 구성원으로서 공통 감각이 형성되지 않고 서로를 타자화하면서 책임만을 요구하기 때문임. 주로 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학생회가 호명됨
- 이제는 SNS로 과대대표되는 공론장이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이 필요하며 이것들이 일상화 되기 위해서 학생회는 장기적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거나 중등교육 시절 학생회 참여,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이러한 공론장에 초대하고 공적인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생사회에 공통감각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더 나아가 학교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 동아리 · 노동조합 · 연구자 · 청년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연계하는 활동들을 통해 공통감각을 형성 및 확장해볼 수 있음

3) 학생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제·욕구·가치와 함께 공공성을 반영한 활동 개발

- 오늘날 학생들은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 민감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 학생사회는 일종의 공공 영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론의 장을 지속해서 만들 필요가 있음
- 학생회의 축제 등 기존사업들은 오늘날의 현실에 맞추어 고유의 목적과 가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오늘날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공공성’의 관점 확보가 필요함.
- 예를 들면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전공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공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활동 및 사업들을 개발해 볼 수 있으며 총학생회 단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등의 문제를 기존사업에 반영하여 문화제 등을 인권 문화제 등으로 개최해볼 수 있음

6. 시민성 관점에 근거한 차세대 학생자치 모델

1) 운영 : 거버넌스·공론장 운영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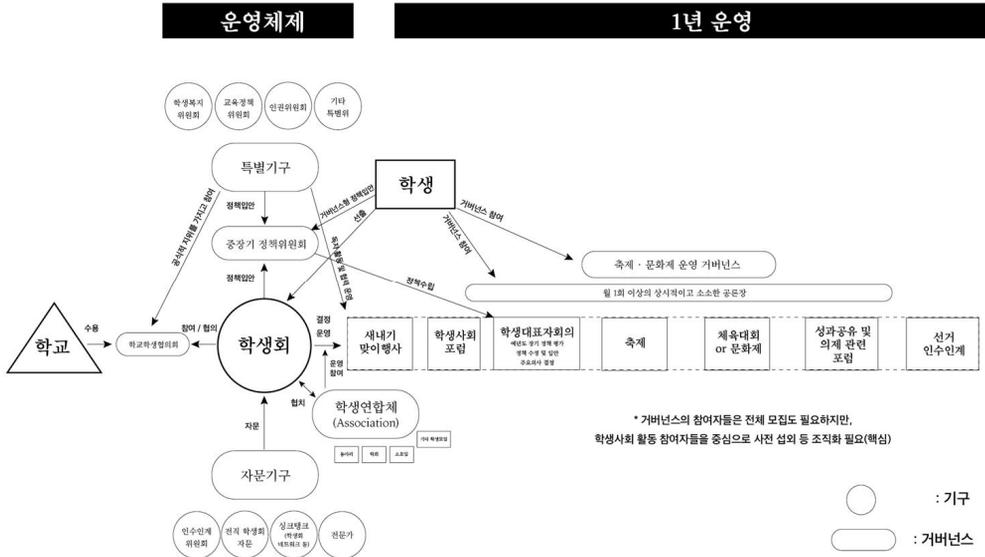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 전체에게 참여가 열려 있는 당사자 거버넌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현재 학생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버넌스, 학생사회의 공론을 이끌 수 있는 공론장의 도입을 통해 학생사회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통해 다음의 주체들을 발굴

○ 장점

- 오늘날 학생사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바탕으로 학생회에 대한 타자화가 쉽게 일어나는 한편, 정작 학생회 활동에 대한 참여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학내 다양한 조직들이 학생사회의 의제 및 활동에 참여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거버넌스의 도입은 학생자치 활동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학내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줄 수 있음

- 학생들의 거버넌스와 공론장 참여는 참여민주주의의 교육 효과를 통해 학생사회에 관한 관심과 고민을 늘리는 한편, 지속적인 주체의 발굴을 통해 학생자치 활동에 학생회 임원 등으로 직책 및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사람 만들어 나갈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6-2] 학생자치 거버넌스 운영 도식



○ 구체 제안

[표 6-4] 학생자치 거버넌스 제안

| 구분 | 거버넌스 | 성격 및 방향 |
|----------|----------|----------------------------------|
| 특별 기구 | 학생복지위원회 | - 학생주도 복지사업 전담, 학교에게 학생복지 정책 제안 |
| | 교육정책위원회 | - 교육 관련 사업 운영 및 학교·학생회에게 교육정책 제안 |
| | (성)인권위원회 | - 인권 관련 사업 운영 및 학교·학생회에게 인권정책 제안 |
| | 기타 특별위원회 | - 학생사회 기록물 관리, 유학생권리 등 필요시 제도화 |

| 구분 | 거버넌스 | 성격 및 방향 |
|----------|--------------------|---|
| 자문 기구 | 인수인계위원회 | - 학생회 임기 종료·시작부터 2~3개월간, 공동회의 및 운영 진행 - 형식적 인수인계 탈피 |
| | 전직 학생회 자문회의 | - 월 1회 정도의 3년 이내 전직 학생회 임원이 참여하는 회의 진행 - 공식화시키되 현직 학생회의 판단에 따라 운영 |
| | 외부 싱크탱크 및 전문가 | - (외부)총학생회협의체 전문화, 학생자치 정책 개발 및 컨설팅 - 관련 비영리 기구(NPO) 등을 고문으로 위촉 혹은 자문 |
| 정책 기구 | 중장기 정책위원회 | - 일반 학생 · 총학생회 · 특별기구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 - 교육 · 복지 · 인권 · 참여 · 문화 등의 분과 운영 -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에 운영 - 단기 의제 및 학생기구 자체 수행 가능 정책의 경우 바로 수행 - 중장기 의제 및 학교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 입안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으로 상정하여 현임 학생회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해서 보고 및 차기 학생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수행 |
| 협의체 | 학교학생협의회 | - 학교-학생 간의 협의체, 공식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례적인 공식 협의체 도입이 필요 - 현재의 중앙운영위원회 외에도 특별기구 등이 공식적 지위와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 보장이 필요 |
| 기타 | 축제·문화제 거버넌스 | - 1학기 축제 및 2학기 문화제(체육대회)를 기획하는 거버넌스 일반 학생들부터 집행위원회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기획 및 집행 - 경험 누적을 위해 별도 거버넌스보다 1개의 거버넌스에서 연속 진행 |
| 공론장 | 상시 오픈 테이블 | - 학생사회의 공론 주제를 무겁지 않게 토론해볼 수 있는 공론장 - '서울시 N개의 공론장'처럼 학생회 외에도 일반 학생들이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학생회가 지원 |
| | 1년 성과 공유회 및 토론회 | - 1년 학생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연도의 학생사회의 의제를 공론해볼 수 있는 공론장 운영 - 당해연도 학생사회 임원들이 발제하고 차기 년도 학생사회 중점 참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 |

2) 체제 : 다양한 학생들의 의제를 담을 수 있는 학생회 체제로의 개편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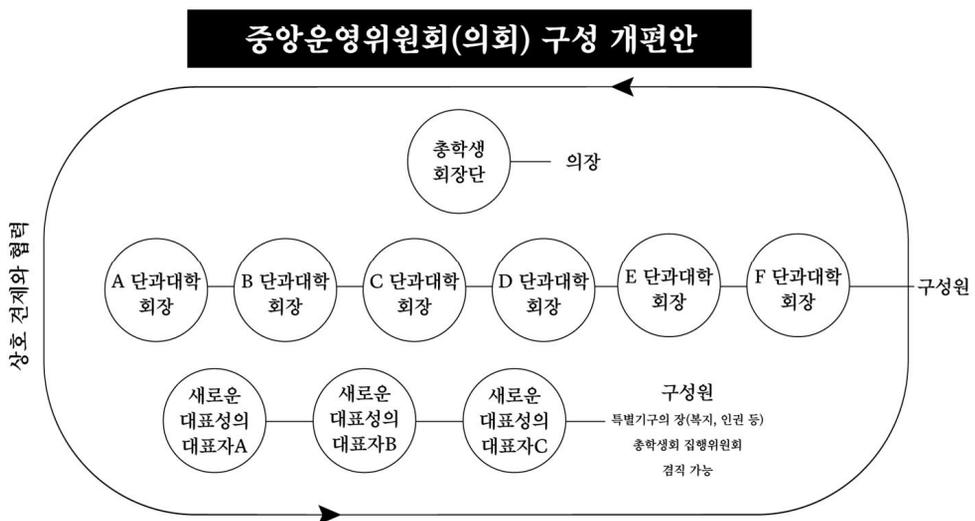
- 민주집중제를 기반으로 전공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 외에도 학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성의 대표자를 뽑아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학생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구체 제안

①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개편

- 기존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총학생회장단 · 단과대학회장단 · 독립학부회장단 등 외에도 전공 대표성 외에도 전체 학생들의 부분적 대표성을 가진 새로운 대표성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위촉
- ‘새로운 대표성의 대표자’는 단과대학 등 전공 단위의 이권 및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전체 학생들의 의제를 공론하는 역할로서 활동
- ‘새로운 대표성의 대표자’는 특별기구(인권위원회 등)의 장·총학생회 집행위원회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 및 의결 권한 외에도 타 단위의 대표처럼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 대표성을 가지고 학교에 학생 의견 대변 (내각제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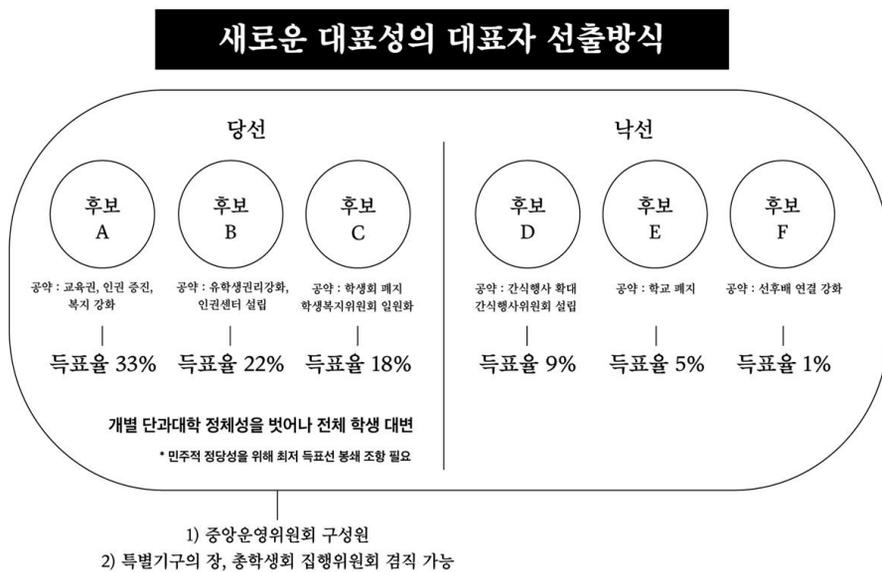
[그림 6-3] 학생회 체제 개편 도식



② 새로운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의 선출 방식

- 총학생회장의 민주적 유일성과 정당성 보장을 통해 집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의 선거구는 총학생회 선거처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되, 소선거구제 방식이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하여 최다 득표순으로 1인이 아닌 다수의 대표 선출하여 권력의 크기를 분산

[그림 6-4] 새로운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의 선출 방식



* 전체학생이 유권자인 중대선거구형 선거로 다수 선출

토론 4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인권센터 역할과 책임

- 인권센터 활성화 프로젝트 경험을 중심으로 -

가톨릭대 인권동아리 '가다'(가다:가톨릭대 인권 찾으러 가다)
(최아현)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인권센터 역할과 책임

-인권센터 활성화 프로젝트 경험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인권동아리 ‘가다’(가다:가톨릭대 인권찾으러 가다)(최아현)

1. 들어가며

2012년 중앙대학교에서 국내 첫 대학인권센터를 개설하였다. 성평등상담소가 인권센터가 되면서 성희롱·성폭력 사안만 담당하던 이전보다 더 포괄적인 인권 침해 사안 및 차별 사안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중앙대에 이어 서울대도 같은 해 인권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대학인권센터는 빠르게 늘어나 2020년 6월 기준, 전국 82개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인권센터의 이상은 멀기만 하다. 성추행 신고에도 도리어 피해자를 해고하는 경우부터, 성추행 정황을 인정했지만 숨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1~2명의 인력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지위를 가진 경우도 흔하다. 본 발제에서는 대학인권센터의 역할과 현황, 그리고 학내 연대로 만들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 대학인권센터의 역할

홍성수(2019)의 연구를 참고했을 때, 대학인권센터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인권 침해 사건의 상담·조사·구제

대학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사자 혹은 제3자는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인권센터는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상담하며 구제한다.

2) 정책 개발 및 자문 권고

대학인권센터는 대학 본부가 인권친화적인 행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내 인권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법령 혹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 학내 인권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3) 교육과 홍보

교원, 직원,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나 인식 재고를 위한 강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인권센터의 역할이다.

대학인권센터는 대학 바깥의 인권센터나 학생이 운영하는 인권위원회보다 더욱 활용도가 높다. 학내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학내 기구인 대학인권센터가 훨씬 수월하고, 학내 구성원들에게도 물리적·심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다. 대학인권센터는 학생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원회와 달리 교직원과 학교 본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안까지 접근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 등 권력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은 물론, 교직원 간 성폭력 사안, 채용 및 근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안 등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 기구인 만큼 학칙 등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어 학내 인권 침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다.

3. 현황

현재, 대학인권센터는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상과 다른 것 같다. 2019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H교수 성비위 사건이 벌어졌으나 징계 절차상 문제부터 징계 수위까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같은 해, 성추행 정황이 인정된 서울대학교 A교수와 H교수는 정직 3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2018년 인천대학교에서는 학내 인권센터가 피해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쓰도록 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대학인권센터가 이러한 양상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징계관리위원회가 교수진으로만 구성되거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인력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구조적·제도적 공백은 대학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인권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긴 하나, 인권센터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대학인권센터를 필수로 하는 법안(각각 노웅래 의원,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권센터에 대한 법안이 전무하다 보니 대학마다 인권센터의 규모와 형태가 다르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인권상담소, 인권연구부, 인권교육부 등이 세부적으로 존재한다. 그만큼 규모도 크고 전문적이다. 반면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인권센터 내부에 세부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인권센터는 학생과 소속의 학생상담센터가 확장되었기에 일반심리상담실이 인권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규모가 다른 만큼 배당받는 예산역시 천차만별이다. 지난 2019년 유니브 폐미에서 조사했던 <학내 구성원 1인당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예산>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전담센터의 1인당 예산은 최소 184원에서 최대 14,288원까지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대학인권센터가 총장직속기구인 대학도 있는 반면, 부속기관에 속하거나 학생처 등 부처 소속인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상위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려워 인권센터의 영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인권 업무를 해본 적 없는 일반 행정직원, 혹은 심리상담사가 인권센터 업무를 맡는 경우도 일반적이었다. 인권센터 직원은 비정규직 직원인 경우가 많아 업무가 불연속적일 확률도 높았다.

4. 가톨릭대 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한 모임 '가다'의 활동과 변화

가다는 가톨릭대 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한 학생 자치모임으로 시작했다. 2019년 여름~가을 경 가톨릭대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나 홍보 부실로 인권센터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 자체가 없었다. 가다는 당시 유일한 학내 인권 기구였던 인권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인 가톨릭대학교를 만들고자 했다.

가다가 정의하였던 '활성화된'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았다.

- 1) 여성,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 학내 소수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인권센터. 이를 위해 강연, 교육, 캠페인 등 인권친화적인 문화 형성활동을 하여야 한다.
- 2) 앞서 말한 활동을 위해 학교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책정받은 인권센터.
- 3)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로 위치한 인권센터.

- 4) 전문적 인력 확보와 안정 고용 형태를 갖춰 가톨릭대와 가톨릭대 인권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인권센터.
- 5) 학내 구성원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영향력 있는 인권센터.

이러한 목표를 위해 가다는 먼저 인권센터에 방문하여 현황을 알아보고 근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보, 인력 등 서로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여 예산현황, 기존까지의 근로자 연속성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학내 인권 관련 동아리와 소모임을 하나의 연대체로 구성하였다. 연대체로서 학내 인권 현안을 파악하고 연대활동을 하기도 했다. 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혐오발언 찾아보기', '함께 하는 인권 공부' 카드뉴스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였다. 카드뉴스 발행을 하면서 #성소수자에게안전한학교가필요하다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내 언론에 가톨릭대 인권센터의 현황을 알리는 내용을 기고하였으며 총학생회, 지역 시민단체, 정당 등에 방문하였다.

한 학기라는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다는 많은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전까지 가톨릭대에 인권센터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학생은 매우 적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인권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 가다가 '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한 학생 자치모임'이라는 소개글을 동아리명 앞에 붙였던 만큼 가다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인권센터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학생의 지지를 얻으면서 인권센터 근로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던 가톨릭대 인권센터는 지난 여름방학에 인권 강좌를 주관하였다. 인권센터가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했던 첫 인권 강좌였다. 이번 학기에는 인권위원회와 함께 4주 간 인권 강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가다가 진행했던 정보공개청구와 학내 언론 기고는 학교 측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기고된 언론 매체를 학교 측에서 읽으면서 인권센터의 예산이 실제로 증가하였다는 인권센터 근로자의 증언이 있었다.

5. 맺으며: 학생과 자치기구로 만나게 된 가능성

대학인권센터는 그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영향력이 약하거나 오히려 학내 인권침해 상황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대학인권센터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규모를 작게 하거나, 예산을 적게 하면서 대학인권센터의 입지가 줄었다. 특정 구성원만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가다 활동을 통해 얻었던 성과는 학생의 지지와 감시가 대학인권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 개인의 대학인권센터 인지도가 상승했고, 대학인권센터 근무자가 더 자유로운 방법으로 협업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의 관심과 학내언론의 환기는 학교로 하여금 인권센터에 관심을 두도록 하였다. 불공정한 처벌역시 학생들의 관심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감시역할을 하면서 징계 과정이 공평해지는 것이다.

학생과 학생 자치기구의 지속적인 관심만으로도 대학인권센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달라진 대학인권센터는 달라진 대학을 만들고 달라진 학생사회를 만들 수 있다. 물론 학생과 학생자치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센터 의무화 법안이 통과하여야 하고 인권센터 규정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한다. 학교 본부도 인권센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도 학생들의 '관심 가지기'는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인권친화적인 대학을 만들 수 있는 힘은 학생에게 있다.

참고문헌

- "중앙대 국내 첫 '학내 인권센터' 개설", 연합뉴스, 2012.03.12
- "4배속 CCTV로 성추행 조사? 인권 없는 전남대 인권센터", 오마이뉴스, 2020.08.04
- "[성폭력과 싸운 학생들 이야기]④모든 대학에 제대로 된 인권센터를", 경향신문, 2020.03.05
- "대학 인권센터 확대 됐지만...역할에 여전히 물음표", 한국대학신문, 2020.01.19
- "광주지역 대학내 인권센터들 유명무실", 광주드림, 2020.08.14
- "'교수님, 제발 떠나주세요'...미투에 멍든 캠퍼스", 시사저널, 2019.06.18
- "대학 성평등센터 직원 10명 중 6명, 관련 분야 경험 없어", 시사저널, 2019.07.30

- 유니브페미(2019), 「2019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성평등 관련 제도 현황 연구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20),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홍성수(2019),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사회』, 제60호

토론 5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역할과 책임

부산대 총학생회(이준영)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역할과 책임



부산대 총학생회(이준영)

1. 서론

대학 내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성별, 이원화 캠퍼스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이전부터 늘 존재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창구(특히 에브리타임)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그 문제가 점점 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비대면 창구, 특히 에브리타임에서는 그 익명성에 기대어 여러 혐오와 차별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게시물들은 별 다른 이유 없이 많은 공감을 받아 ‘HOT 게시물’ 란에 올라가기도 십상이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총장직할 지원·부속시설인 인권센터와 더불어, 특히 대학본부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은 없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등을 보다 거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인권센터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몇몇 문제들에 부딪히며, 실제로는 그 존재를 모르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인권센터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왜 해결할 수 없는지, 또한 대학본부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대학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대학본부는 각 대학별로 설치된 인권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언급하였듯이 총장직할 지원·부속시설로 인권센터를 두고 있는데, 인권센터는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평등과 자유의 실현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 설립 목적은 차별과 혐오 등을 근절하기 위함에 결을 두고 있다.

2020년 7월 1일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에서 부산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포하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출범과 동시에 대학원생들이 주도적으로 부산대학교 인권 규범의 근간을 마련하고 학내 학칙 및 규정이 인권적 관점을 바탕으로 생성·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으며⁴⁾, 2020년 10월 30일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구성원의 인권 및 성평등 교육 연구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2차피해 예방, 사건처리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 활성화를 통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전국 대학의 인권센터 간 협력관계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체계성을 높이고 연계망을 넓혀가고 있다.⁵⁾

4) 부산대학교 의생명융합공학부 공지사항 1번 게시물

5)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공지사항 119번 게시물



그러나 인권센터는 내부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몇몇 문제에 부딪힌다. 이에 대학본부의 부속 기관인 인권센터가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본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1. 부족한 대외 홍보

- 여러 기관·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강화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이나 상담받은 인원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다소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 사건들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니었다.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차별과 혐오 사건이 없었기 때문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인권센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너무 복잡하기 때문도 아니다. 다만, 인권센터라는 기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존재를 알더라도 그저 유명무실한 기구로만 생각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럼에서 볼 수 있듯이⁶⁾,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거한 인권센터의 사건

6)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이용안내' 카테고리

신고 및 처리절차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체계적이다. 그럼에도 실제 사건 대비 접수되는 사건이 적다는 건 인권센터가 아직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거



이처럼 인권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 자체적으로, 혹은 총장직할 기관이니 만큼 대학본부 차원에서 인권센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이 차별과 혐오를 경험했을 시 인권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과의 접근성이 제일 높은 총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 ①. 인권센터와 학생자치기구가 협업하여 인권센터라는 기관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나 이벤트 등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인권센터의 존재와 역할 등을 알린다.
- ②. 총학생회 등에서는 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인권센터 부스도 함께 운영하여 인권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센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

- ③. 대학본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들과 인권센터와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인권센터와 학생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의 해결방안들은 모두가 함께할 때 그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사실, 인권센터 차원에서 각종 비교과 활동이나 인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2018년 성평등상담센터가 인권센터로 바뀌어 인권센터가 개소된 뒤, 바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학생들과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⁷⁾ 그 이후로도 인권센터는 학내 성폭력 현황을 조사하고⁸⁾, 재학생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GoodPNU’ 강의를 3차례 실시하는 등⁹⁾ 인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행사들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인권센터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기껏해야 현수막을 달고 부산대학교 홈페이지나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는 것 외에는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며, 이 플랫폼들은 일반 학우들이 접하기에는 너무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었다. 실제로 인권센터에서 ‘찾아가는 인권·성평등 교육’과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내 구성원이 이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2018년 부산대학교의 이수율은 △교원 28.7% △직원 및 조교 26.2%, △학생 9.1%였으며, 2019년 학생의 성폭력 교육 이수율은 24%, 가정폭력 교육 이수율은 1%에 불과했다.¹⁰⁾ 이러한 낮은 이수율의 원인으로는 홍보 및 접근성 부족이 꼽히며, 다른 원인으로는 학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에 참여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총학생회와 협업하여 총학생회 SNS 계정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업로드하여 이를 홍보하고, 총학생회에서도 인권센터를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면 인권센터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홍보성과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며, 홍보 전략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학생들을

7) <http://www.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7625>
<인권센터 개소와 함께 간담회 진행됐다.>, 부대신문, 18.09.09

8) <http://www.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8026>
<학내 성폭력 현황 조사한다.>, 부대신문, 18.12.09

9) <http://www.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8692>
<잠재된 인권 감수성을 일깨워봐!>, 부대신문, 19.09.08

10) <http://www.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3>
<성범죄 예방 교육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낮은 이수율>, 부대신문, 20.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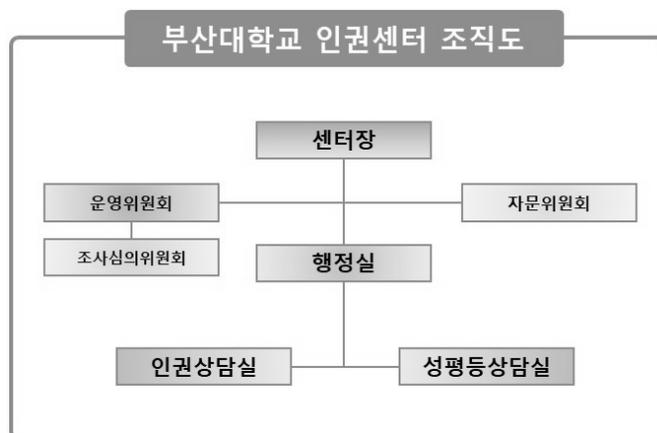
유치하기 위한 홍보라고 하기에 기존 홍보 전략들은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앞서 언급되었듯이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 또한 제공하지 못한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벤트를 병행하여 상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나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바, 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도 총학생회나 대학본부와 연계하여 이벤트를 병행하면 보다 성공적인 홍보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권센터와의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또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불러올 수 있다. 다소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질 인권센터라는 존재와 그 내부 인원들과의 터울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권센터와의 친근감을 높임으로 결과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이런 세미나 과정 속에서 “차별 바로 알기” 와 같은 교육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성 홍보 전략은 존재해야만 할 것이다.

2. 부족한 예산

- 인권센터 예산 증대

인권센터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결정적으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인 홍보를 진행하고자 해도 충분한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대외적인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 보다 많은 학우들이 인권센터를 이용하고자 해도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부딪힌다.



현재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도¹¹⁾는 위 그림과 같다. 인권상담실 혹은 성평등상담실로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이 찾아와 상담을 받으며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 조사 및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한 인력은 인권센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첫 단추인 상담 인력이다.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기 힘들고,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상담을 받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비단 부산대학교 인권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국립대학 내 인권센터 대부분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22개의 국립대학의 경우 평균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의 경우 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 중 실질적인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 뿐이다. 그마저도 조직도에서 볼 수 있듯 성평등과 인권 분야로 나뉘어 있어 각 분야에는 1명의 상담원만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 상담원들이 상담 업무만을 진행하는 건 아니다. 상담을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도 담당자 업무에 포함된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전임 상담원은 전했다, 담당자들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늘 제기해왔다.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행정실장은 매년 본부에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¹²⁾

부산대학교의 경우 인권센터에 예산을 지급해주는 곳은 대학본부인데, 대학본부는 현재 인권센터 인력 충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조속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같이, 사실 어느 부서를 가도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늘 제기된다. 대학본부로부터 예산을 지급받는 어느 기관이든 혹은 기구든 돈은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되어 있으며, 이는 본인이 속해있는 단위인 학생자치기구 총학생회도 다르지 않다. 적은 돈을 각 특성에 맞게 고루 분배하려고 하다 보니 더 적은 예산들이 잡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증대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학교는 돈이 없다.” 라는 말을 늘 들어와서 알겠지만, 학교의 전체적인 예산이 증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인권센터에 대한 예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

11)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 카테고리

12) <http://www.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9>
 <인권센터 인력 부족 충원 계획 멀었다.>, 부대신문, 20.10.12

해두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다면 대학 내 차별과 혐오는 더욱 만연할 것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인권센터의 역할은 더욱 약화만 될 것이다. 현재, 차별과 혐오라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인권센터의 역할과 중요도에 조금 더 가점을 두고, 다른 기관이나 기구의 예산은 다소 줄이더라도 인권센터에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해 요청대로 더 많은 인력을 배치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부족한 인권 교육

- 인권 관련 수업 개설

앞서 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언급이 되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낮은 참여율이 제기되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 낮은 홍보율과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의 부족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사실 의무가 아닌 인권 관련 교육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동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바꾸어 말하면, 참여율에 변화는 있을 것이지만 애초부터 관심이 없던 학생들의 참여를 바라기는 힘들 것이며, 관심이 있더라도 학업에 바쁜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에 현재 부산대학교의 경우 교양선택, 교양필수, 일반선택 통틀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권 관련 수업을 문제삼아, 인권센터와 협업한 인권 관련 수업의 개설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재 부산대학교의 수강편람을 살펴볼 수 있는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¹³⁾ 들어가서 살펴보면 인권과 관련된 수업은 교양과목으로도 별로 개설되어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학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지만 그 주제와 수업은 다소 가벼운 교양필수 과목으로 ‘고전읽기와토론’, ‘열린사고와표현’, ‘대학실용영어’ 등을 두고 있지만, 이 수업들 또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인권센터에서도 개소된 이후 인권 관련 수업의 개설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해왔다. 2020년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에 대한 논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인권 관련 수업의 개설 필요성은 인권센터도 역설한 바 있다. 이처럼 인권 관련 수업의 개설은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과는 다소 다른 장점을 가진다. 이는 수업으로 개설

13) www.e-onestop.pusan.ac.kr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은 교과와는 상관없는 부가적인 활동이다. 먼저 이런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업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가 어렵다. 또한, 졸업을 하기 위해 채워야 할 학점 중 일부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데에서 부가적인 활동도 아니기에 학업적 진척도와 인권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나아가, 부산대학교의 경우 교양필수 과목으로 존재하는 ‘열린사고와표현’ 과목에서 ‘인권’ 이라는 주제를 적어도 한 번은 필수적으로 다루도록 한다면 이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수업이기에 일련의 반감 없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닐 것이다.

4.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 등록금 동결

최근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인상시킨 대학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이 2019년에 2018년보다 10% 정도 오른 등록금을 지불했다고 한다.¹⁴⁾ 또한 중앙대학교의 경우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매년 크게 올라 학교 측에 인상의 근거를 학생들이 요청한 바 있고, 연세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전원을 입학생에 한해 전원 글로벌 인재학부 소속으로 바꿈으로 등록금이 자연스럽게 비싸진 사례가 있다. 이에 연세대학교는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2학기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오른 등록금을 받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¹⁵⁾

14)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71829>

<외국인 등록금 인상...“우리가 봉인가 vs 우리도 외국선 더 내”>, 국민일보, 19.04.09

15)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3426>

<널 뛰는 외국유학생 등록금 인상...외국 유학생 “인상 근거 대라”>, U’s Line, 19.06.13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표

1 1학년

(단위 : 원/학기)

| 대학(원) | 학과(계열) | 등록금 | | | 계 |
|--------|--|-----|---------|-----------|-----------|
| | | 입학금 | 수업료 I | 수업료 II | |
| 인문대학 | 각 학과 | 0 | 378,000 | 1,302,000 | 1,680,000 |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과 | 0 | 378,000 | 1,302,000 | 1,680,000 |
| | 사회복지학, 심리학, 문헌정보학, 신문방송학과 | 0 | 378,000 | 1,402,000 | 1,780,000 |
| 자연과학대학 | 각 학과, 지능형헬스사이언스융합전공 | 0 | 386,000 | 1,796,000 | 2,182,000 |
| 공과대학 | 각 학과(부) | 0 | 412,000 | 1,952,000 | 2,364,000 |
| 사범대학 | 국어교육, 독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윤리교육, 교육학과 | 0 | 378,000 | 1,302,000 | 1,680,000 |
| | 유아교육, 특수교육, 지리교육과 | 0 | 378,000 | 1,796,000 | 2,174,000 |
| |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체육교육과 | 0 | 386,000 | 1,796,000 | 2,182,000 |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표(정원 외 외국인)

1. 1학년

(단위 : 원/학기)

| 대학(원) | 학과(계열) | 등록금 | | | 계 |
|--------|--|-----|---------|-----------|-----------|
| | | 입학금 | 수업료 I | 수업료 II | |
| 인문대학 | 각 학과 | 0 | 378,000 | 1,432,000 | 1,810,000 |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과 | 0 | 378,000 | 1,432,000 | 1,810,000 |
| | 사회복지학, 심리학, 문헌정보학, 신문방송학과 | 0 | 378,000 | 1,542,000 | 1,920,000 |
| 자연과학대학 | 각 학과 | 0 | 386,000 | 1,975,000 | 2,361,000 |
| 공과대학 | 각 학과(부) | 0 | 412,000 | 2,147,000 | 2,559,000 |
| 사범대학 | 국어교육, 독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윤리교육, 교육학과 | 0 | 378,000 | 1,432,000 | 1,810,000 |
| | 유아교육, 특수교육, 지리교육과 | 0 | 378,000 | 1,975,000 | 2,353,000 |
| |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체육교육과 | 0 | 386,000 | 1,975,000 | 2,361,000 |

부산대학교의 경우도 위의 책정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원 외 외국인에 대해서는 약 9% 정도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사실 이를 문제삼을 순 없다. 예컨대, 부산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대외교류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 본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 등을 제공해주고 이 본부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이 다소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¹⁶⁾ 마냥 불합리한 책정표는 아닐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사립대학들에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기사들에 의하면 매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사립대학들이 존재하며,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하여금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 연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이러한 정책 때문에 자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분명 문제가 맞다. 대학 차원에서는

16) 실제로, 부산대학교는 유학생지원센터를 두어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튜터링 프로그램과 무료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재원 확보의 대상이 근거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을 통한 것이라면 대학본부, 나아가 교육부가 나서더라도 이러한 정책들을 제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외국인 유학생이든 우리나라의 대학생이든 등록금을 동일하게 동결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III. 결론

대학 내 차별과 혐오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나 대학본부 단일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권센터도 대학본부의 부속 기관인 바, 대학본부는 인권센터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권센터는 대학본부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자치기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홍보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사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본부 차원에서는 인권 관련 수업을 개설하거나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며, 현재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 정책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상’은 ‘등록금 동결’과 같은 방안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위한
대학공동체의 역할과 책임

| 인 쇄 | 2020년 11월 28일
| 발 행 | 2020년 11월 28일
| 발행인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55 | F A X | (02) 2125-0917
| 웹사이트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디자인모장
| 전 화 | (02) 2278-1990 | F A X | (02) 2278-1992

ISBN 978-89-6114-778-1 9337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배포, 상업적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